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1조(총칙)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원 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구원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용언어)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계약체결)

- ① 낙찰자는 물품구매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8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을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 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 공제조합,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 법에 의한 전기통신 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상당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연구원계약담당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연구원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0조(수량조절)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이행상의 감독)

- ①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기타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연구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1.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2.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정한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납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4조(규격)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한 견본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

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의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7조(포장명세서)

-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담당자 또는 검수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구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 및 상표)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연구원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연구원과 계약시 필요에 따라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연구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연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연구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① 연구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 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와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3. 연구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4.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때
 -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연구원은 제2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입찰참가 제한된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5.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피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가한 자
-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8. 연구원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9.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① 연구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연구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